

포상규정

제 정 2004. 12. 1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포상의 대상)

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분야의 학문적, 기술적 발전에 공헌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(포상의 종류)

포상의 종류는 공로상, 기술상, 학술상, 우수논문상, 신진논문상 등으로 구분한다.

제 4 조(공로상)

공로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그 발전을 위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 5 조(기술상)

기술상은 본 학회의 발전과 국내·외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분야의 기술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단체나 기관 혹은 개인에게 수여한다.

제 6 조(학술상)

학술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학문적 진보를 이룬 논문을 게재 혹은 발표하거나 탁월한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 분야의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 7 조(우수논문상)

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문적 진보를 이룬 논문을 게재 혹은 발표하거나 탁월한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분야의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 8 조(신진논문상)

신진논문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관련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 혹은 발표를 통해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40세 이하의 과학자 및 기술자에게 수여한다.

제 9 조(포상 대상자의 추천)

- ① 기술상, 학술상, 우수논문상, 신진논문상은 본 학회 회장단 또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- ② 공로상은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다.

제 10 조(포상심의위원회)

-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에는 포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(포상의 시기)

포상은 본 학회의 논문 발표회 및 정기총회일을 정기 포상일로 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 12 조(부상)

포상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이중포상 금지)

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.

제 14 조(포상기회의 공정)

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(1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